

교원인사규정

제 정	1995. 3.
개 정	1999. 9.
개 정	2002. 3.
개 정	2004. 9.
개 정	2006. 3.
개 정	2007. 9.
개 정	2009. 3.
개 정	2010. 1.
전면개정	2011. 1.
개 정	2011. 10.
개 정	2012. 7.
개 정	2013. 6.
개 정	2014. 3.
개 정	2014. 8.
개 정	2016. 5.
개 정	2018. 10.
개 정	2019. 8.
개 정	2020. 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7.22.)

제2조 (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학교법인우송학원 정관」제39조제3항에서 정한 교원 중 강사를 제외한 교원을 말하며(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원을 포함한다), 본 대학의 전임 교원은 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11.10.1.)(개정 2019.8.21.)

②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개정2012.7.22.)

③강사는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강의전담강사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문 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전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및 계약기간, 임금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9.8.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전임교원 및 강사 외에 연구교원·명예교수·대우전임교원·초빙교수·특임교수·겸임교수·석좌교수·객원교수·산학협력중점초빙교원등(이하“비전임교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2011.10.1.)(개정2019.8.21.)

⑤비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은 학칙에서 정하는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규정에서“임면”이라 함은 임용, 승급, 보직,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면직을 말한다.

⑦이 규정에서“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을 말한다.

⑧이 규정에서“장려교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매년도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연구 및 창작활동·교육 및 학생지도·산학협력 및 봉사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25점 미만(원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본 조항에서는 같다)”로 평가 받은 교원. 이 경우 각 영역별 평가에서 1개의 평가요소 만으로 “2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이는“25점 미만”으로 본다.
2. 매년도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연구 및 창작활동·교육 및 학생지도·산학협력 및 봉사 부문 영역 중 하나의 영역에서 “25점 미만”으로 평가 받은 교원(각 영역별 평가에서 1개의 평가요소 만으로 “2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이는 “25점 미만”으로 본다)으로서 역량평가 영역 중 교원역량 부문의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의 합이 25점 미만인 교원.
3. 매년도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연구 및 창작활동·교육 및 학생지도·산학협력 및 봉사 부문 영역 중 하나의 영역에서 “0점 이하”로 평가 받은 교원
4. 매년도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역량평가 부문에서 20점 미만인 교원
5. 산학협력중점 교원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신설2011.10.1.)
6.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과 발전 등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교원으로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려교원으로 지정된 교원(신설2014.8.25)

제3조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의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 ②비정년트랙 계약제 전임교원의 특임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외국인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교원 인사규정”을 적용한다.(개정2009.3.1.)
- ④산학협력중점교원에 대하여는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을 적용한다.(개정2011.10.1.)
- ⑤비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임면절차) ①교원의 임면은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우송학원(이하 “본 학원”이라 한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조 (계약제 임용기간) ①전임교원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보장
2. 부교수: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3. 조교수: 2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4. (삭제 2012.07.22.)
5. 승진임용자의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2014.04.01.신설)
- ②전임교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계약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의 2 (계약제 전임교원의 계약내용) ①계약제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한다.

1. 소속 및 직급
2. 근무기간
3. 급여
4. 직무
5. 업적평가
6. 복무

7. 근무기간 만료 후 재계약
8. 계약의 해지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교원의 자격) 전임교원은 교육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자격과 경력 등을 갖춘 자로서 연구 실적 및 교육에 대한 신념과 인격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제7조 (겸직금지) ①전임교원은 본 대학 외에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한 겸직의 경우
2.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은 경우
3.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총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전임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 3 (인사발령의 효력 등) ①본 대학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교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교원의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임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교원업적평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은 본 대학의 「교원업적 평가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연구실적물

제9조 (연구실적물의 인정 범위) ①저서는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출판사에서 출판된 것이어야 한다.

②논문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이 논문의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1. SCI급 학술지(이공계-SCI, SCIE, 사회과학-SSCI, 인문-A&HCI, 예술-SCOPUS 등)에 게재한 논문. 이 경우 국내에서 발행되는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을 포함한다.
2. SCI급을 제외한 국제발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4. 국내발간 학술지(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학술지를 제외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5.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 간행물(일간지 및 대학신문은 제외한다)에 게재한 논문

③예·체능계는 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을 포함하며, 그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조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인된 기관의 확인서 및 관계증빙서류(사진·발표작품·팸플렛·녹음테이프·악보 등)가 있어야 한다.

④학위논문은 발표기간에 제한 없이 1회에 한하여 교원임용을 위한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임용 직전의 직급에서 발표된 학위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⑤박사학위논문의 심사를 통과하고 임용일 이전까지 학위취득이 가능하여 “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한다.

제10조 (연구실적물의 개인별 환산)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인정한다.

1. 제9조 제2항 제1호의 1인 단독연구 : 200%
2. 제1호 이외의 1인 단독연구: 100%
3. 제9조 제2항 제1호의 2인 이상의 공동연구
: 연구책임자는 $[1 \div (n+2)] \times 4$ 로, 연구참여자는 $[1 \div (n+2)] \times 2$ 로 환산
4. 제3호 이외의 2인 이상의 공동연구
: 연구책임자는 $[1 \div (n+2)] \times 2$ 로, 연구참여자는 $[1 \div (n+2)] \times 1$ 로 환산
5. 석사학위논문: 100%
6. 박사학위논문: 200%
7. 예·체능계 실기에 대한 연구실적 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제11조 (연구실적물의 심사) ①임용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연구실적물의 심사는 심사대상자의 상위직에 재직중인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의 교원(그중 1인 이상은 타 대학 교원)에게 위촉한다.

③연구실적물 심사 평점은 각 실적물 별로 심사자 전원이 “우”이상이어야 한다.

④제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학위 논문은 심사를 면제한다.

제 3 장 신규임용

제12조 (신규채용) ①신임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전임교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 인원, 지원 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고, 접수된 응모자 중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한다.

③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 교직원인 자로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본 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재직한 후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수 분야의 전공자 및 외국인을 초빙하는 경우
3. 해당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수를 초빙하는 경우

4. 해당 전공의 특성화 또는 본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6. 기타 해당 학과의 긴급한 사정으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신규채용 전임교원의 자격) ①신규채용 전임교원(이하 “신임교원”이라 한다)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실적의 환산율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계약제 임용) ①신임교원은 제5조의2에서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임교원의 계약기간은 당사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참작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신규임용 시기)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6조 (신규임용 절차 및 기준)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절차 및 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7조 (재 공모 및 보류) 응모자의 수가 전공 분야별로 매우 적거나 적합한 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공모 공고를 하거나 채용을 보류할 수 있다.

제18조 (임용후보자 선정) ①총장은 신규임용 심사결과 임용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임용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위원회에 별도의 심사를 위촉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제19조 (신규임용 제청) 총장은 신규 임용 대상자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학원 이사장에게 임용을 제청한다.

제20조 (신분보장) ①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 대학 교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 학원 정관 및 본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신임교원은 임용기간중이라도 임용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해태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임용계약이 해지된다.

제21조 (신임교원의 재계약 조건) ①신임교원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본 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업적평가결과가 매년 각 영역별로 60점 이상 총점 1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과 별도로 신임교원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소관 학장이 부여한 업무 및 연구실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은 1편을 200%로, 동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은 1편을 100%로 환산한다.

③산학협력 등 특별한 임무를 목적으로 신규로 임용된 신임교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의2(신임교원의 조건부 재계약 및 계약해지) ①신임교원이 제21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봉조정(감액), 계약기간 단축, 특정한 임무부여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신임교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계약을 체결한 후 조건부 재계약 기간 내에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만료와 동시에 재계약을 아니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계약을 체결한 신임교원이 기간 중에 직무를 해태하여 조건부 계약내

용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신임교원이 본 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장려교원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만료와 동시에 재계약을 아니 할 수 있다.

제22조 (휴직, 복직, 징계) 신임교원의 임용기간 중의 휴직, 복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 학원 정관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23조 (직호 및 보수) ①신임교원의 직호는 교육경력, 연구실적, 산업체 근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②신임교원의 보수는 상호 협의하여 연봉으로 정한다.

제24조 (퇴직금) 신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 학교교직원연금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25조 (강의 및 학생지도) ①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총장이 정하는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②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학생 지도교수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 4 장 승진임용

제26조 (승진임용 시기) 전임교원의 승진임용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27조 (승진 소요기간) ①전임교원의 승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은 본 대학에 근속한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 되어야 한다.(개정2012.7.22.)

1. 이 규정 개정일 전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 조교수에서 부교수 : 7년
2. 이 규정 개정일 전에 조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 조교수에서 부교수 : 4년
3. 이 규정 개정일 이후에 임용되는 조교수의 경우 조교수에서 부교수 : 6년
4. 부교수에서 교수 : 5년

②본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결과 "S등급"에 해당하는 근무기간은 전항의 승진 소요기간에서 해당 근무기간을 감한다.

③본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D등급"에 해당하는 근무기간은 제1항의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승진임용 조건충족 등) ①승진심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으로 한다.

1. 제27조에서 정한 승진 소요기간을 충족한 전임교원
2. 이 규정 개정 전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B등급"이상을 5회 이상, 이 규정 개정 전에 조교수로 임용된 자가 부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B등급"이상을 3회 이상, 이 규정 개정 이후에 신규로 조교수로 임용된 자가 부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B등급"이상을 5회 이상,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B등급"을 4회 이상을 획득한 교원. 이 경우 "D등급"과 "S등급"은 그 횟수에 따라 각각 가감한다.(개정2012.7.22.)
3. 이 규정 개정 전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가 부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연구실적물이 500%, 이 규정 개정 전에 조교수로 임용된 자가 부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연구실적물이 300%, 이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조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연구실적물이 500%,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연구실적물이 400% 이상인 교원(2012.7.22.)
4. 제3호의 정한 연구실적의 인정범위는 제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5. 연구실적물의 환산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직위별 정원 등은 대학의 실정에 따라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은

정원 내에서도 연령과 교원업적 및 대학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에서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로 한정할 수 있다.

③장기간 연수중이거나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교원은 해당 기간 동안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의2 (특별승진)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특별승진 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개정2016.5.30.)

제29조 (승진임용의 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승진할 수 없다.

1. 정직의 경우 : 18월
2. 감봉의 경우 : 12월
3. 견책의 경우 : 6월

제 5 장 재계약 임용

제30조 (재계약 시기) 전임교원의 재계약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31조 (재계약 대상 전임교원) 제5조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재계약 대상자로 한다.

제32조 (재계약 등) ①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계약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업적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보수 또는 연봉을 조정(감액)하거나 계약기간 단축 또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계약 임용할 수 있다.

1. 전임교원이 계약근무기간 중 교원업적 평가결과 장려교원에 해당된 경우
2. 전임교원이 계약 임용기간 기간 중 제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실적물이 연평균 50% 미만인 경우

③전임교원이 연속 2회 이상 또는 통상 3회 이상 장려교원에 해당한 경우 재계약임용을 아니 할 수 있다.

④계약기간중인 전임교원이 연속 2회 이상 또는 통상 3회 이상 장려교원에 해당한 경우 잔여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제2조제7항 제6목에 해당하는 장려교원은 재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2014.8.25)

⑥재계약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2014.8.25.)

⑦장기간 해외연수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전임교원도 이전의 업적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2014.8.25.)

제 6 장 정년보장

제33조 (정년보장 교원임용) 본 대학에서 교수 직급으로 임용된 후 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2회 이상 "S등급"인 경우 정년보장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3조의2(정년보장 교원임용) 정년보장 교원 임용 대상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평정결과 그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할 경우 평균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2013.6.1.)

제33조의3(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정년보장 대상 교원을 심사평정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본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2013.6.1.)

②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내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2013.6.1.)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 평가는 [별지 제1호]의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평정표에 의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은 전략기획처에서 관장한다.(신설2013.6.1.)(개정2018.10.08.)(개정2020.09.10.)

제34조 (정년보장 교원의 의무) ①정년보장 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은 2년 마다 제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학술지에 등재한 연구 실적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의 환산은 제28조 제1항 제5호에 의한다.

②정년보장 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은 매년 교원업적 평가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C등급”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정년보장 교원의 조건부 계약체결 등) ①정년보장으로 임용된 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D등급”에 해당된 경우 특별한 임무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정년보장으로 임용된 교원이 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D등급"에 3회 이상 해당되는 경우 차기 연도에 정년보장 교원에서 그 임용을 해지하고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임용한다.

제 7 장 교원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제36조 (교원업적평가 결과의 상계) 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S등급"인 교원은 "D등급"의 평가 결과와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의 "S등급"은 제33조 및 제37조에서 정한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37조 (성과금 지급) ①교원업적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등급별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성과상여금의 각 등급별 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S등급"과 "A등급"의 합 : 15%내외
2. "B등급" : 35% 내외
3. "C등급" : 35%내외
4. "D등급" : 15%내외

③성과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당해 연도 예산 사정과 전체 전임교원의 목표달성도 등이 본 대학의 위상 제고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8조 (연구년 제) 연구년 교원의 선정 기준과 연구년제 기간 중인 교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8 장 보직 등

제39조 (보직) ①보직이라 함은 부총장, 처장, 교양교육원장, 국제교류원장, 대외협력원장, 산학협력단장, 학부(과)장 및 부속시설 등의 장을 말한다.

②부총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고, 그 외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

제40조 (휴직 및 복직) 전임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본 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 (직위해제 및 해임) 전임교원의 직위해제 및 해임에 관하여는 본 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 (면직) ①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사망한 때
2.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신규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계약 되지 못하였을 때
4. 재계약 대상교원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때

②전임교원 본인이 면직을 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43조 (호봉 및 보수) 전임교원의 호봉 및 보수 또는 연봉에 관하여는 본 학원 정관과 본 대학 교직원보수규정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 (정년) ①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이 속하는 학기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5조 (신분보장) 전임교원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 및 본 학원 정관에 의거 신분을 보장받는다.

제46조 (복무) 전임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국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포상) 전임교원의 포상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8조 (징계) 전임교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본 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 (적용) 교원인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본 학원 정관이나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례 규정) 제2조제7항의 “20점”은 2010년도 분까지의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하고 2011년도 분부터의 교원업적평가에서는 이를 “25점”으로 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S등급, A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2회, 1회를 B등급으로 가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제2조제7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은 2014년도 평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개정규정 제33조의2항 및 제33조의 3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체능계열 실기분야 연구업적 인정 기준

분야별	연구(실기) 실적	인정비율	
미 술	① 국제전, 미술대전, 상공전 - 입선 1회 - 특선이상 1회	50% 100%	
	② 지역규모 공모전 - 입선 1회 - 특선이상 1회	25% 50%	
	③ 공인된 개인전 - 개인전 1회 - 2인전 1회 - 기획전 1회	100% 50% 50%	
	④ 공인된 단체전의 회원전 및 공모전 - 입선 1회 - 특선이상 1회	25% 50%	
	⑤ 공인된 국제 초대전 출품 1회	70%	
	⑥ 공인된 국내 초대전 출품 1회	46.6%	
	⑦ 심사위원(신규 채용 대상 교원에 한하여 적용함) - 국제전 심사위원 1회 - 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회 - 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1회 - 시도 단위 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회	50% 100% 50% 25%	
	문 학	① 문예단행본 출판	100%
		② 문예지 게재 - 문예지 게재(소설, 희곡) - 문예지 게재(시, 수필, 평론)	33.3% 20%
		음 악	①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 독주회, 개인작곡 발표회 1회
②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 1회	70%		
③ 인정된 발표회의 3중창 이상, 3중주 이상, 단독음악회 및 3인이상 작품 발표회 및 반주 1회	50%		
④ 인정된 종합 연주회 등 - 중주 및 반주 1회 - 협주곡 협연, 오페라 주역 1회	33.3% 100%		
체 육	①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연구 발표회 1회	100%	
	② 올림픽 경기 출전	100%	
	③ 전국대회 입상 1회	50%	
	④ 국제공인 심판자격 1회	100%	
	⑤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	100%	
창작실기 활동	①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100%	
	②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1회	50%	
학·예술관계 분야의 훈장 1회		200%	

[별지 제1호]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평정표

피평정자	소 속 :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				
	직 급 :	성 명 : (인)				
	성 명 :					
구 분	평 정 요 목	평정기준				
평 가 영 역		A (20)	B (15)	C (10)	D (5)	E (0)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20)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및 사명감 나. 연구업적의 우수성 및 지속적인 학문적 성취 가능성 다. 건강상태(연령 참작)	(20)	(15)	(10)	(5)	(0)
2.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20)	가.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자세 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다. 학생취업지도 능력과 자세	(20)	(15)	(10)	(5)	(0)
3. 대학발전 기여도 (20)	가. 보직 수행 등 대학·학과발전 기여도 나. ‘가’ 항목의 지속 가능성 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 수주 및 추진에 참여한 실적	(20)	(15)	(10)	(5)	(0)
4. 근무생활 및 청렴도 (20)	가. 근무자세 나. 타 업무종사 관계 다. 개인생활의 청렴도 라. 규정준수 여부	(20)	(15)	(10)	(5)	(0)
5. 기타 사항 (20)	가. 학내·학과 간 인화관계 나. 적극성 및 책임감 다. 구성원간 업무협조 및 신뢰감 라. 업무추진력 및 리더십	(20)	(15)	(10)	(5)	(0)
	소 계	()	()	()	()	()
합 계 (100점)		() 점				

※ 평정방법 : 평정자는 평정요목을 종합하여 평가영역별 평정란 20점~0점 중 택일하여 표기